

대전고등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109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1096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19가합10865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1. A

2. B

3. C

4. CS(개명 전 성명: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김용현, 정현옥, 김태림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N

2. O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담당변호사 김윤

3. P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윤

변론 종결 2024. 6. 5.

판결 선고 2024. 7. 3.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19가합108651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주식회사 Q와 피고 N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제1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2.

체결한 매매계약 및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제4, 7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0. 체결한 각

매매계약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별지2-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 N는 원고들에게 별지2-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1) 주식회사 Q와 피고 O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제2,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0.

체결한 각 매매계약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별지2-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 O는 원고들에게 별지2-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1) 주식회사 Q와 피고 P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제5, 6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0.

체결한 각 매매계약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별지2-3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 P는 원고들에게 별지2-3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한 비용 포함)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부 대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 C, CS, E, F, G, H, I, J에게 각 38,811,615원, 원고 K에게 77,623,229원, 원고 L에게 67,560,953원, 원고 M에게 69,142,1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6. 15. 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2024. 4. 1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함과 동시에 부대항소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명시적으로 예비적 청구취지를 취하하거나 변경하지는 않았으므로, 주위적 청구취지만을 위와 같이 확장·변경하고, 기존의 예비적 청구취지는 유지하는 취지로 선택하여, 위와 같이 정리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 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사업에 따라 2014. 1. 16. 무렵 각 회사 상가건물인 BW동(등기부상 주소: 대전 서구 CT), BY동(등기부상 주소: 대전 서구 BZ,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각 준공되었고, 사업승인을 받아 그 분양이 시작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번 부동산'이라 하고, 각 순번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 "D"를 "CS(개명 전 성명: D)"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9행 괄호 다음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행 "이에 대한"과 "지연손해금을" 사이에 "2014. 1. 17.부터의"를 추가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AA 등 측은 2016년경 T 및 피고 N 등 각 회사의 임원진들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중 일부에 관하여도 고소내용에 포함시켰는데, 당시 원고들은 각 회사의 주주총회 참석 및 총회 결과 보고 등을 통해 회사 Q의 재정상태 등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고소사건이 진행될 무렵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사실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늦어도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T 및 피고 N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16. 7.경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표한다는 U이 2016년경 대전지방법검찰청에 피고 N(피고 O의 배우자) 및 T(피고 P의 배우자), CU, CV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실, 그 고소사실 중에는 피고 N 및 T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염가로 분양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2016. 7.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AA 등이 각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의 파기환송심 계속 중 원고들이 2019. 4. 15.경 각 회사를 위한 보조참가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① 위 불기소이유서(을 제9호증)에 'U은 피의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21명의 투자자들이 같이 고소하려고 한 것을 자신이 대표하여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직접 위 고소를 진행하지 않은데다가, 이 사건 피고들 중 U에 의하여 고소된 사람은 피고 N 뿐이었는데,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원고들이 U의 위 고소 당시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모두가 2016년경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회사 Q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위 고소 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검찰청 검사가 2016. 7. 29.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나, 그 처분 결과가

원고들에게도 알려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③ AA 등이 2014. 8.경부터 각 회사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로서는 해당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공방이 오가는지를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관련 민사소송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약정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위 쟁점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루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있었던 2014. 10.경 및 같은 해 11.경으로부터 약 4년이 넘게 지난 2019. 4.경에도 AA 등이 아니라 각 회사를 위한 피고보조참가신청을 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이 2019. 9. 26.경 확정된 이후인 2019. 10. 22.경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들은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 확정 이후에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16년경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있는 사실 및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마지막 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제1심에서는 회사 S와 회사 Q가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임을 주장하다가(피고들의 2020. 7. 10. 자 준비서면 참조), 당시에 이르러서는 각 회사가 동일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공동체임을 전제로, 회사 Q의 상가를 할인분양한 것은 회사 S에 대한 해방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각 회사 사이의 금원 대여 및 변제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각 회사는 별도의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진도 별도로 선임되어 있고, 주식 또한 그 발행주식 총수를 달리하여 각각 발행되어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서의 약정서 또한 각 회사가 서로 다른 당사자로서 각 별개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회사 S와

회사 Q는 서로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임이 인정될 뿐이다. 게다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사실상 각 회사의 자산이 혼용되었다거나 실제로 각 회사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각 회사의 법인격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⑤ 피고 N는, 1번 부동산의 계약금이 2014. 10. 14. 입금되었고, 피고 N의 위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서가 같은 달 22.경 작성되었으며, 위 부동산의 잔금이 같은 달 29.경 입금된 과정에 비추어 보면, 1번 부동산의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2014. 10. 14. 해방공탁금의 재원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중 적어도 위 계약금 상당 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N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초 1번 부동산의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은 피고 N가 아닌 소외 BT이고, 그 계약금의 납부 시점 역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N와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전임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 N가 1번 부동산을 분양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 지장이 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6행 "⑤"를 "⑥"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다)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악화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제20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행과 마지막 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바(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원고별 피보전채권액은 아래 표 '피보전채권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A, B, C, CS, E, F, G, H, I, J	각 52,876,331원	각 45,118,364원	각 97,994,695원
K	105,752,662원	90,236,729원	195,989,391원
L	92,043,976원	78,539,368원	170,583,344원
M	94,198,204원	66,223,896원	160,422,100원

다.

○ 제1심판결문 제22면 각주 14) 제1행 "1번"을 "7번"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2면 표 아래 제1행부터 제24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소결론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의 고유의 권리로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공동담보가액은 각 원고별 피보전채권액과 비교하여 그 초과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즉, 원고들이 13개의 소를 각각 제기한 경우와 동일하게, 각 원고별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역시 각 원고별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을 명해야 한다), ① 원고 A, B, C, CS, E, F, G, H, I, J의 경우, 피고 N 명의의 1, 4, 7번 부동산의 각 공동담보가액이 위 원고들의 각 피보전채권액 합계액(97,994,695원)을 각 초과하고, 피고 O, P 명의의 각 부동산의 각 공동담보가액 역시 위 원고들의 각 피보전채권액을 모두 초과한다. 다른 원고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살펴보면, ② 원고 K, L의 경우에는 피고 N 명의의 1, 7번 부동산, 피고 P 명의의 6번 부동산의 각 공동담보가액은 위 원고들의 각 피보전채권액 합계액(각 195,989,391원, 170,583,344원)을 각 초과하는 반면,

피고 N 명의의 4번 부동산, 피고 ○ 명의의 2, 3번 부동산, 피고 P 명의의 5번 부동산의 각 공동담보가액은 원고 K, L의 각 피보전채권액 합계액에 미달하고, ③ 원고 M의 경우에는 피고 N 명의의 1, 4, 7번 부동산, 피고 ○ 명의의 3번 부동산, 피고 P 명의의 6번 부동산의 각 공동담보가액은 원고 M의 피보전채권 합계액(160,422,100원)을 각 초과하는 반면, 피고 ○ 명의의 2번 부동산, 피고 P 명의의 5번 부동산의 각 공동담보가액은 원고 M의 피보전채권액 합계액에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 원고 A, B, C, CS, E, F, G, H, I, J의 경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위 원고들의 관계에서 위 원고들의 각 피보전채권액 전액(각 97,994,695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할 수 있고, ② 원고 K, L의 경우, 1번, 6번, 7번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은 원고 K, L의 각 피보전채권액 전액(각 195,989,391원, 170,583,344원)의 한도 내에서, 2 내지 5번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은 위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각 159,265,836원, 162,625,874원, 162,625,874원, 127,681,472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할 수 있으며, ③ 원고 M의 경우, 1번, 3번, 4번, 6번, 7번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은 원고 M의 피보전채권액 전액(160,422,100원)의 한도 내에서, 2번, 5번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은 위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159,265,836원, 127,681,472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들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24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4163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각각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모두 위에서 인정한 각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내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각 피보전채권액 전액 또는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범위 중 원고들이 각자 청구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취소를 명하고, 그와 같은 금액의 가액배상을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회사 Q와 피고 N 사이에, 1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2. 체결한 매매계약 및 4, 7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0. 체결한 각 매매계약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별지2-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회사 Q와 피고

○ 사이에 2,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0. 체결한 각 매매계약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별지2-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회사 Q와 피고 P 사이에 5, 6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0. 체결한 각 매매계약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별지2-3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피고들에 대한 별지 2-1 내지 2-3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채권자대위 청구)를 하였는데, 원고들의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여 주위적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다만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았다가 당심 계속 중 비로소 주위적 청구취지를 각 확장한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100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동현

판사이진영

판사이선미

별지

1) 원고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지급명령에 따라 2014. 1. 16.부터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4. 6. 5.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고, 원고 M의 경우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에 따라 2014. 1. 17.부터 2021.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4. 6. 5.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